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안 (주요 내용)

2013. 11. 4. ver.

### □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 없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과  
균등한 삶의 기회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이 필요하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할 때, “학업중단 청소년”은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이른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된 “학업중단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2년도에만 201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총 68,188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했는데, 이는 전체 재적학생 수 대비 1.01% 해당하는 수이다.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학령은 고등학교로 나타났다(34,934명,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 기준 약 51%).

그러나 이와 같이 매년 적지 않은 수의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7조가 유일하며, 동 조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서 대안학교의 대상으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를 찾아볼 수 있음). 이 외에는

다만 “위기청소년” 즉,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담 및 교육(제13조), 기초생계비 등의 특별지원(제14조)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동 법 시행령 제7조). 한편 정부에서는 부처별로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이들 정책들이 기본원칙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다. 그에 앞서 부족한 인력과 재원은 이들 각 정책이 최소한으로 운영되는 것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반면 현재 시·도 등 15개의 지자체에서는 한발 앞선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특별시 조례 등 11개의 조례에서 그 지원의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을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다양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 등). 또한 이들 조례를 근거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과 균등한 기회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이 필요하다.

#### □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법률안	제정 이유
<p>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유도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기본이념 및 방향을 명시함.</p>	<p><b>제0조(기본이념 및 방향)</b></p> <p>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기본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 보장</p> <p>2. 청소년 개인별 특성과 환경의 존중 및 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가지는 법률이 될 것이므로 지원의 기본이념과 방향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li> <li>• 기본이념과 방향은 「헌법」과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 지원법」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li> <li>• 서비스 지원은 복지 제공이라는 점에서, 지원 구조가 일방적·수동적·조건적·시혜적일 수 있으며, 지원 과정에서 인권 보장, 배려, 존중 등이 경시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지원 대상이 청소년일 때 그 가능성은 더 높음. 따라서 이 점에 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인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여 법과 정책을 설계해야 함.</li> </ul>

	<p>3.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p> <p>4.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및 책임 강화</p> <p>5. 중앙행정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친화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되어야 함.</li> </ul>
<p>나. 스스로의 삶의 주체로서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청소년을 상정한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을 도입함.</p>	<p>제O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p> <p>2.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학업중단 청소년, 미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대안교육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관련 조례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들은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li> <li>•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부적응자, 낙오자, 예비범죄자 등의 부정적인 편견이 존재함. 조사에 따르면 쉼터/청소년복지센터 청소년, 대안학교 청소년을 불문하고, 정규학교를 그만두고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관하여 “주위 사람들의 편견”이라고 하고 있음.</li> <li>• 이와 같은 편견은 다양한 유형의 학교 밖 청소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li> <li>• 만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위와 같은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이 부적응자, 낙오자, 예비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음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률은 지원은커녕 오히려 악법이 될 우려가 있음.</li> <li>• 또한 지원의 면에서 보더라도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규정한다면 지원의 내용이 “학업복귀”에만 집중되게 되는데, 이는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의 현실적인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이며, 특히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업 복귀 외의 지원이 더욱 절실한 경우가 많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유형별로 분류할 필요는 있으나 이는 지원내용을 통해 실무에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으로 충분함. 예를 들어 상담 후 “취업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임.</li> <li>•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명명하고 범위를 넓게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li> <li>• [사례 - 부적응자가 되어버린 “학교 밖 청소년” A와의 인터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조정선수였고,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정상 조정을 그만둔 후로 저는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퇴를하기로 결정했지요. 하지만 막상 자퇴를 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자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었고,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지금은 다시 대학에 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li> </ul>
<p>다. <u>다양한 유형의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에 대한 균등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u> “학교밖청소년지원 프로그램”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p>	<p><b>제O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상담지원 및 생활교육지원, 학업지원, 취업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4.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교육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 이외의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p> <p>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p>	<p>(1)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업 외에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학업복귀 외의 지원이 더욱 절실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학업복귀, 특히 정규학교로 돌아가는 것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이를 지원해야 함.</li> <li>• 따라서 「청소년 복지 지원법」 상의 “학업복귀 프로그램”을 선택지의 하나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념이 필요함.</li> <li>• 한편 정부, 지자체 단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년 단위로 정기</li> </ul>

	<p>기관을 말한다.</p> <p><b>제O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b></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li> <li>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개발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업</li> <li>3. 상담지원, 생활교육지원, 학업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li> <li>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한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업</li> <li>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li> </ol>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원계획 수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말에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적으로 수립하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에 앞서 현황파악이 필수적인바, 지원계획 수립의무와 더불어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함.</li> </ul>
	<p><b>제O조(상담 및 생활교육 지원)</b></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2) 다양한 유형의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청소년 복지 지원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제17조 1개 조문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에 복</li> </ul>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환경개선을 위한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가정생활교육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과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b>제O조(학업지원)</b></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초등학교, 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li> <li>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li> <li>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에서 규정하는 학력인정을 위한 검정고시의 준비</li> <li>4. 그 밖에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과 균등한 학업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 기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b>제O조(취업지원)</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적성진단 및 진로지도</li> <li>2. 직업훈련 및 직업체험</li> </ol>	<p>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근거법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청소년 복지 지원법」은 청소년 일반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바, 그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14조).       <p>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li> <li>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li> <li>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li> <li>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li> <li>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li> <li>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li> <li>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li> </ol> </li> <li>•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정규학교를 다니는 청소년과의 사이에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인바, 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li> <li>• 청소년 지원시설의 절반 이상인 53.7%가 학업 중단 사유로 ‘학교 다닐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지원의 내용은 각각 다른 특성과 환경에 놓인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정규학교복귀는 그 한 선택지에 불과하도록 규정해야 함.</li> </ul> <p>1) 상담지원</p>
--	--	--

	<p>3. 직업연계 및 사후 관리</p> <p>4. 기타 취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이 규정하는 직업교육 등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 청소년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O조(자립지원)</b></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의한 특별지원(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은 1단계 지원으로 필수적인 지원임. 그러나 상담은 어디까지나 지원을 하기 위한 과정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파악해야 함.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실제 “생활비지원(47.6%)”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음.</li> <li>•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그 특성과 처한 환경,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계기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제공하는 것은 실로 만만치 않음. 상당한 기다림이 필요함. 따라서 일시적, 단편적인 프로그램을 다수 마련하기보다 학교 밖 청소년 한명 한명을 1:1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함.</li> <li>• 상담의 내용은 학업복귀를 위한 진로상담 뿐 아니라,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이 병행되어야 함.</li> </ul> <p>2) <u>생활교육 지원</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제도 밖에서 스스로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가정생활 교육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지원되어야 함.</li> </ul> <p>3) <u>학업지원</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지원시설의 절반 이상인 53.7%가 학업 중단 사유로 ‘학교 다닐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밝히고 있음.</li> <li>• 따라서 학업지원으로 「초·중등교육법」상 정규학교로의 진학 외에 동등한 선택지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미인가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으로 진학하거나 홈스쿨링 등의 대안교육을 포함</li> </ul>
--	--	--

		<p>해야 함. 이 때 후속지원도 필요할 것인바, 예컨대 대안교육기관으로 진학하더라도 학비가 부족하여 다닐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 제31조가 규정하는 무상 의무교육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에 다니는 것을 조건으로 할 때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의무교육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지원되어야 함.</li> <li>• 예산 기타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 개인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면, 대안교육기관 기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li> <li>• 관련하여 교육부조차 ‘대안교육 확대·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는 학교설립주체, 설립기준, 교육과정 등에 대폭적인 특례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대안학교”설립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보완하여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여전히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안교육기관만이 해당될 것이므로 상당수의 “학교 밖 청소년”은 여전히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것을 예상할 수 있음.</li> </ul> <p>4) 취업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지원의 경우 현재 청년고용촉진법에 제3조에 따른 청년(만 15세 이상)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의 책무 및 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고등학교 중퇴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기회 제공,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으나,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이 절실함.</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편 별도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임.</li> </ul> <p>5) 자립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들은 쉼터, 상담지원센터, 대안학교를 불문하고, “생활비지원(48.0%)”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음. 즉 학업 또는 취업을 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가장 시급하며 필요한 지원임. 또한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인터넷 중독 방지 프로그램 등의 의료지원, 문화적 혜택 등의 정서지원도 필요함(2011년 학업중단위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체험센터 청소년의 70%이상이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함).</li> </ul> <p>6) 지역사회 자원 발굴,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원에 있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깊이 강구되어야 함 (위탁형 대안학교는 한계가 있음)</li> </ul>
<p>라.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u>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지역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연계</u>하기 위하여 지역 단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p>	<p><b>제○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전문 인력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및 협력의무)</b></p> <p>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p>	<p>(1) 지역단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일반("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임.</li> <li>• 연혁을 살펴보면 2012. 12. 1.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1290호) 개정으로 종전의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되었음. 동시에 업무도 상담에서 상담복지지원으로 확대되었음.</li> <li>•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본래 속성상, 여건상 "학교 밖 청소년"을</li> </ul>

	<p>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O조 내지 제O조에 따른 지원</li> <li>2.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li> <li>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li> <li>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li> <li>5.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li> <li>6.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li> <li>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li> <li>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전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p>	<p>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는 실적위주의 단기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으며, 본래 업무인 상담도 업무과중으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센터의 도입은 필요함.</li> <li>• 그 센터는 별도 예산을 통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인적·물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하며(즉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에 과중 또는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됨.), 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임.</li> </ul> <p>(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업무가 상당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음. "학교 밖 청소년"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업무가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무엇보다 지역특색이 고려되어야 함(노원지역만 하여도 지역 내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간의 협력, 교육복지 위기지원기관, 드림스타트, 정신보건센터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이 지속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li> <li>• 다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대상 면에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담당해야 할 기능이 있음. 예: "학교 밖 청소년" 발굴, CYS-net 연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홍보(캠페인 등), 지역 내 자원 연계에 역량 강화, 대안 학교 연계 등</li> <li>• 그러나 실제에서 대상인 "학교 밖 청소년"을 구분해 내는 것이 용이하지</li> </ul>
--	---	--

		<p>않을 수 있음. 학교 안 청소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과정에서 구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인 경우에 한해 양 센터 간에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센터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 다른 방식으로, 이 법률안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양 센터가 업무를 분장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p> <p><u>(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체</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에야 가능함. 지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이 다르며, 따라서 각 지역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임.)</li> <li>•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내 자원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다만 국가단위의 예산 지원은 필요함.</li> <li>•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규정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역시 도입취지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효과적이라는 점에 두고 있음.</li> <li>• 한편 현재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서울특별시 등), 대안학습공간지원센터(경상남도)가 있음.</li> <li>•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치 의무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도록 함(지자체가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국</li> </ul>
--	--	---

		<p>가 차원에서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간의 업무협력이 반드시 필요함.</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할 것임(참고자료 3 입법조사관 검토보고서).</li> </ul>
<p>다. <b>“학교 밖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b>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p>	<p><b>제0조(청소년에 대한 고지 등 의무)</b>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은 청소년에 대하여 제0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등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고지하여야 한다.</p> <p><b>제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제공 의무)</b> 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밖청소년을 인지한 즉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여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학교 밖 청소년을 연계하여야 한다.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연계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해당 청소년의 개인별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계 시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준수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으로부터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 여부 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이 발굴될 수 있어야 하며, 그 방식은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나아가 「청소년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에 부합하고 자치권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함.</li> <li>•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는 물론, 더욱이 일단 “학교 밖 청소년”이 된 후에 발굴하려고 할 경우 실제 발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li> <li>• 반면 통계에 따르면 등교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시설이나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8.1%에 불과하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8.5%에 이르며, 2011년 학업중단위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학생의 96.8%가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을 모른다고 응답함(참고자료 2 p25, p35).</li> <li>•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 전과 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고지하여야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함.</li> <li>•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각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 체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현재 구축되어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종합대책은 교육청, 일선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바로 대상 청소년을 파악한다고</li> </ul>

	<p>그 범위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p>	<p>되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발굴과 별도로 일단 발굴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 중복된 상담을 피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간의 정보공유는 필요해보이나, 이 경우 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는 있어야 할 것임(보험회사, 병원 사례). 다만 이는 학교 전학할 때 생활기록부가 이관되듯이 실무상 프로토콜로 해결할 수 있을 것.</li> <li>• 한편 발굴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적합한 지원을 파악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당연함. 시간과 노력을 보장해주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필요한 지원을 파악한 후에는 현실적인 지원으로 반드시 연결될 수 있어야 함.</li> </ul>
--	-------------------------------	--

1) 두드림·해밀사업은 전국 5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해서 강남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강서구, 용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그 외의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두드림·해밀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것은 서울에서도 지역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정책의 혜택을 다르게 받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다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합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참고자료 2 p14).